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20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8)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
2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38.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1)
3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추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2)
40.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4
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5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3)	5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2)	5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5
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5
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8)	5
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38
1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38
12.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38
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38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38

1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38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8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8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38
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38
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38
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38
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	38
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38
2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2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8
3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8
3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38
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39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74
38.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1)	74
3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2)	74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81
40.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81

(13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심사한 후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하고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위반이므로 위헌·불법적인 계엄 선포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부에서는 법적으로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국군 통수권자가 여전히 윤석열 씨라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내란수괴로 수사 당국에 의해 내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언제라도 해외 도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하여 출국 금지당할지,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하여 언제 계좌 동결 조치가 따를지 모르는 범죄자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곧바로 체포, 구속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법 제2조 6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 씨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 건의를 제안했는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즉각 탄핵해 그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는 주장도 높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고 비상사태입니다. 만약 국회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저,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체포되어 고문, 폭행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야 법사위원, 국회의원들도 체포되어 구금되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살 떨리는 12월 3일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국회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하루빨리 국정 안정을 되찾는 데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요소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불씨, 즉 국지전이라도 일으켜 제2의 전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겠느냐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내란수괴로 내란범인, 피의자인 윤석열 씨가 국군 통수권자 지위에 있다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이 지위를 신속하게 박탈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법적으로 중지하고 국군 통수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윤석열 탄핵, 구속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 표결과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라도 좀 더 냉정을 되찾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본분을 다하는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법사위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 의원 외 169인 발의)(의안번호 2206226)

2.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0)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3)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2)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7)
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4)
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8)
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시04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수사요구안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사 대상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대상자 명단을 열거하면서 검거를 위한 위치추적 요청 및 비상계엄 해제 후 증거인멸 시도 등의 범죄 혐의 사건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내란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등을 추가하였고, 둘째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체로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가하였으며, 셋째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 시도 및 유혈력 행사, 상해, 국회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통해 내란에 가담한 주체로서 국군방첩사령부 및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추가하였고, 넷째 그 밖에 이 사건 사실관계가 명확함을 감안하여 각호의 ‘의혹사건’이라는 용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곽규택·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최근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장식·엄태영·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 등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심의회에서 계속 중인 사건,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부칙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소위원회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안 들어오십니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이고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이 판국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하시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보다 더 한 차원 뛰어넘는 국가의 비상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모아 주시는 차원에서 조속히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을 다 하실 것 같은데, 다 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토론 순서지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순서지를 가져올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지금 공수처, 검찰 그리고 경찰 이렇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 주체가 세 군데이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영역 다툼도 있는 것 같고 또 공수처법 24조에는 중복수사인 경우에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공수처에서 법 24조에 의해서 이첩요청권을 발동한 이유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수사권을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저희들은 법 24조에 따라 가지고 이첩요청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죄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도 그 시행령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고 불법체포 미수죄도 규정하고 있고 특수공용물 손괴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범죄와 관련 사건으로써는 내란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의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군 인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가용 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

구하고 부득불 이첩 요청을 한 것은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보고 지금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더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수사권을 더 주장해서 그런 부분에 끼어들기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이첩요청권을 통해서 합리적인 혜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제가 그러면 팩트만 몇 가지 확인할게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가 왜 여기저기서 영장을 청구하냐, 한군데로 통일해서 영장 청구를 해라라는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였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구한 것뿐만 아니라 세 기관에서 아마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영장을 청구하면서는 공수처법 24조의 내용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판사님께서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협의를 하라고, 어쨌든 3개의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 오니까 그 혼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한군데로 좀 교통정리 할 필요성은 또 있어 보이고 법원 입장도 그래 보이는데.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영장 기각 사유가 수사기관 여러 군데에서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니까 한군데로 통일해서 와라, 그래서 기각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영장 발부는 해 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라 이게 맞지 않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금 일선 법원에서 영장 관련해서 그와 같은 사유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이 쟁점이 가지는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나 내란죄 여부라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된 상황에서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법원 입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선 당장 수사 시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저는 나중에 해결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영장을 발부했어야 맞지 않아요? 아니, 영장 기각 사유가 세 군데에서 동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못 해 주겠다 하는 것도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영장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당부를 말씀드릴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은 잘 아실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수사의 적법성, 증거능력의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또 그에 따른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이 너무 고지식하게 한가한 생각을 가지고 영장 기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순서지가 왔습니다. 5 플러스 1분으로 할 테니까요 위원님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고요.

순서지에 따라서 전현희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회의는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국무회의 심의 관련해서 모두 다 문서로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과정은 자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국무회의, 통상의 국무회의.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엄 발포 당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부장관도 계셨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전현희 위원 계엄실무편람에 따른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한 이후에 장관들이 계엄선포문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고 총리가 부서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해서 계엄포고문을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엄포고문에 필수적으로 서명해야 하는 장관은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기재부 그리고 국무총리입니다. 이 5명의 서명이 없으면 사실상 이 계엄포고문은 위헌·위법한 포고문이 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이날 계엄포고문에 서명을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그렇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른 장관들, 국무총리도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 장관은 서명한 적이 없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전현희 위원 지금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 계엄포고문에 필수 서명해야 하는 장관이 법무부장관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서명하지 않았다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이 전부 다……

○전현희 위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확실하다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그 포고문에 서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서명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전현희 위원 만약에 이 계엄포고문에 서명을 했다면 그것은 그 서명에 동참한 장관이나 총리가 계엄포고문에 대해서 법적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향후 법적 책임을 같이 지겠다라는 그런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관이 그런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법한 계엄포고문이 되지 않습니다. 즉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계엄령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위헌·무효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장관들이 몇 명 정도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를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경황이 없어서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법무부장관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도 다른 위원들과 같이 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총리께서 많은 말씀을, 국무위원들 의견을 취합한다기보다는 총리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총리는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총리께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계엄 선포 절차에 따르면 계엄선포문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 계엄선포문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가 법률 검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법무부가 한 적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전혀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계엄 선포였다 이런 뜻이 되는데 사실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죄송하지만 계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학교 다닐 때 헌법책 읽은 것 이상으로 다시 준비해 보거나 한 적이 없어서 그날……

○전현희 위원 그러면 법무부나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이 계엄 선포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라든지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전현희 위원 법원행정처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내란 범죄를 저지른 범죄 혐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 조작을 그리고 입 맞출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영장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를 비롯해서 모든 법관들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전현희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영장 발부의 원칙에 따라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전현희 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공수처장께서 직권남용죄를 통해서 관련된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가 사실상 지난번에 김영철 검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과 인력이 이 엄청난 사건을 감당할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사실상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사건의 이첩을 요청해서 공수처에서 이걸 전부 다 수사를 하겠다 이런 것은 좀 과한 욕심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매우 심각하고 위기에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도 국수본과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함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공수처의 인력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공수처는 지금 전 인력을, 전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첩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검찰·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를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다시피 시행령에서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 구속 영장과 관련해서 혹시 수사권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염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안에서 굉장히 큰 적법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후 영장을 청구하는데 우리 공수처에서도 사전 영장의 형식으로 이첩받기 전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그나마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관련해 가지고는 군 인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제한된 인력에서나마 우리 공수처가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파견받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사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수처에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군 인사와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해서 통합적인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장님께서 워낙 막 빠르게 말씀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짤막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를 검찰에서 수사할 수는 없지요?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시행령……

○위원장 정청래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란죄를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시행령으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도 수사할 수 있고 장성급 장교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내란죄는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생각할 때 지금 검찰에서는 이 수사에 손을 떼라 하는데도 계속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수처하고 국수본하고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주장의 요지예요. 그랬을 때 공수처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거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인력 과견이 제일 좋은 안이지만 그렇지 않고 국수본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수본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상의 이첩권을 행사했고 저희들도 빨리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촉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못 했고, 이첩요청권 행사 이후에도 국수본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빨리 국수본을 만나서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상황이니까 그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김용민 위원 12월 3일 날 10시 30분경에 전국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이때 어디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전에 자다가 한 12시 30분쯤에 연락을 받고 그때 바로 법원에 나와서 한 12시 50분쯤 도착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렇게 하실 때 이게 비상계엄 상황이다 아니다, 직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전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헌법 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현실감이 없었고 그 당시에 사법부에서 그런 상황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요일 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계엄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은 법원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봐도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게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판의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좋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행정처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말씀 드릴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조심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어요.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추락할 뻔했습니다. 이미 국제적인 신용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에서 법원조차 여기에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도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그게 아니라 사법행정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란이다, 범죄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규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영장과 관련해서 위법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부를 못 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여러 군데 영장이, 여러 수사기관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수사기관에게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것 제가 진작부터 법원 입장 정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청법 이미 개정돼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었으니까 법원이 빨리 위법수사인지 아닌지,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시행령을 저렇게 마구잡이로 들렸을 때 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미리 좀 정리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금 대법원에서도 그 쟁점이 계류되어 있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무리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요 재판 중인 상황을 위헌적인 힘으로 눌러서 법원 재판도 다 찍어 누르려고 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서 ‘재판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도 분명히 분노는 하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그 분노를 법원에 맞게 적절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침묵이 답이 아니에요.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용민 위원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검찰에서 직권남용죄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답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공수처장님도 그건 똑바로 아셔야 돼요. 검찰청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제 말씀을 좀 오해하셨습니다.

○김용민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검찰청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면서 부패·경제만 남겨 놨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넣어 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원 범죄에 원래 있던 것을, 직권남용을 부패 범죄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상위법 위반입니다. 분명히 줄이라고 했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현법재판소에 재판 청구하면서 ‘수사권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죄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전제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검찰

은 수사권이 여기에는 1도 없습니다. 0입니다, 0. 제로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 취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적들이 출연했어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말고 아주 단호하게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수사도 중요하지만 신병 확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김용민 위원 동의하시냐고요, 신병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동의합니다.

○김용민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고 그 수괴에 부화뇌동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신병 확보해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용민 위원 동의하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동의합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저 내란범도 같이 구속해야 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내란 공범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안 물어봤습니다. 내란범에게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내란 공범입니다. 당장 신병 확보하세요. 지금 옆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공수처장, 하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수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내란 공범 당장 수사하고 신병 확보하시라고요. 그리고 당장 출국금지 요청부터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출국금지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법무부장관에 대해 했어요, 안 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용민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저희들……

○김용민 위원 빨리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출국금지 대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할 대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오늘 오전 국수본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 질문에 윤석열 씨도 출국

금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서로 출국금지라든가 이런 것도 경쟁이 붙을 수 있는데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 아닙니까? 내란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예요. 일단 출국금지 조치부터 하고. 그리고 해외 도피를 하면 자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외 송금을 할 수도 있어요, 스위스 계좌 이런 데. 그래서 계좌 동결까지 같이 해야 돼요.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계좌 동결 이것 빨리 하세요,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수사 지휘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확실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한테 지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토론하세요.

○박균택 위원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균택 위원 내란 사건에 대한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겠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박균택 위원 내란 피의자 윤석열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아니,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아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답답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화법 그만 쓰시고 솔직한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윤석열 피의자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은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첩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검찰은 한 달 안에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데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남의 사건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의 말씀이 저의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반복

해서 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도 분명히 얘기하세요.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 열심히 하는 사람들 뺏어 오려고 하면서 의지도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지는 있다고 치고, 언제까지 구속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 뜨뜻미지근한 태도로는 사건을 받을 수가 없겠지요. 한 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남의 사건을 달라고 합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지요.

해병대 사건, 지금 1년 넘었는데 처리 안 하고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것과 지금 이 해당 사건은 다릅니다.

○**박균택 위원** 잠깐만요, 1년 지나도록 처리 안 하고 있지요?

그리고 대통령실 압수수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첩요청권의 행사와 관련 돼서는……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얘기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물 탄 듯 술 탄 듯 그러지 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언제까지인지 시기를 물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은 또 법원의 역할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게까지 의지가 불분명하면 저는 공수처로 사건 이첩하는 것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원을 할 수가 없지요, 옆에서. 경찰에게 보내지 말라고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의지부터 분명히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고 그때 요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지금 영장이 중복 청구됐다고 기각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인권 보호 차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여러 가지 논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중복 청구, 기존 청구된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성 측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피의자 인권 보호도 일부 고려됐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박균택 위원** 아마 중복 수사를 하든 말든 이처럼 중요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쥐를 잡는 데 하얀 고양이든 검정고양이든 몇 마리를 투입하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빨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말씀에 공감하고 법관들도……

○**박균택 위원** 추위에 떠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가장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이 만약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복 수사를 혀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야당 대표를 상대로 3년씩 수사권 남용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피의자 구속됐다고 백팔십 번씩 불러 대고 스물한 번씩 불러서 진술 세미나를 열고 한 가지 사건으로 4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할 때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안 했습니다. 야당 인사를 상대로 네 군데에서 쪼개기 재판을 하고 서울·수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을 법원은 방치를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권침해를 못 본 체하다가 물적 처분, 장소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 문제가 있길래 여기서 법원이 갑자기 인권을 이유로 중복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후배 법관들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상황의 엄중함을 모든 법관들이 다 인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정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공수처장님은 뭐하시는 분이고 법원행정처장님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동안 누누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범죄를. 채 상병이 목숨을 잃었을 때 격노해서 전화해 가지고 수사 외압 한 사람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부인이란 말입니다. 이걸 누누이 얘기했는데……

공수처장, 핸드폰 압수수색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못 하면서 무슨 윤석열을 구속하겠다는 겁니까!

저희는 기대합니다. 그동안 못 했지만 윤석열 구속해야 돼요!

구속하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그 현장에 가고 거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 한다는데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를 왜 못 잡습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 얘기 하지 않았으니까 공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범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공범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잘된 겁니까? 잘된 거예요,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부분은 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공범이에요! 법무부장관 당장 그만두세요! 그래서 공범이에요!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려 섞인 이야기 뭘 했어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왜 그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비상계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마디 말 못 한 사람이 공범이라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데 왜 자기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모두 다 윤석열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왜 거기서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범이에요! 기다리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판단은……

○서영교 위원 판단이라니요! 공범이에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범이에요!

그리고 화면 틀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에 지금 변화 있는데 법무부장관만 모르고 있군요. 윤석열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법무부장관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나온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같으세요? 저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전부 다 저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외치는 모습이 모든 국회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처벌받아야 돼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이 내란죄의 수괴 4명의 장성들에 대해서 통신 내역을 조회하는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기각시켜요? 맞아요, 안 돼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서영교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긴 얘기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내란죄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영장을 요청했는데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아요? 잘못됐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의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 부분은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이유 중에 중복 청구라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언론을 통해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본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보세요! 법원행정처장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사유 중에 중복 청구라는 것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중복 청구 때문에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사유는 없어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으면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정신 바짝 차려 주세요! 지금 누가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두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역사에,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힘이라고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란법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탄핵을 저지시켰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란의힘이에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제 감옥에 가고 구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북한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어요. 그 무인기를 누가 띄웠다는 겁니까? 김용현이 띄웠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무인기를 통해서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이렇게 해도 내란수괴가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법 절차대로 하지도 않고 국회라고 하는 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하면 그걸 무슨 죄입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금 문제 되고 있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내란죄 내용은 뭐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국헌문란이 주된 요소인 것으로……

○서영교 위원 국헌문란은 뭐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국가의 중요시설·기관에 대한 작동을 정지시키고 정상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국가의 기관 작동을 정지시키고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내란죄……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의 말씀대로 내란죄가 이야기됐습니다. 여차하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는 온몸에 맹이 들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이걸 불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라고 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에 있으면서도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와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관계자들 모두 정지시키고 탄핵시켜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 법무부장관도 저런 말을 하고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제발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옛날의 박성재로 돌아와서 윤석열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는 확실하게 자기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할 능력이 없어요! 당장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당장 윤석열이 갖고 있는 모든 휴대폰, PC 그리고 공문서 다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법원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영장 그다음에 추후에 청구할 영장들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그런 수사들을 해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지금 수사권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란수괴 윤석열을 빨리 직무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체포하고 직무 정지시키고 출국금지도 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각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겠다고 하고 또 공수처장님은 출국금지 지시도 하셨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사유들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부서에서……

○박은정 위원 장관님, 모르시나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알지 못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박은정 위원 직권으로 지금 출국금지를 해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오기 전이라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빨리 출국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국수본은 친윤 검찰을 거쳐서 영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신속하게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만이 유일하게 바로 윤석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맞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지금 국수본에서 압수수색영장은 우리 공수처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검찰청법에 따른 시행령에서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행령이 위헌·위법이에요. 한동훈 특검법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따른 직권남용 수사가 나중에 위법으로 판단을 받고,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그것을 문제 삼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 공수처에서 법상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군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요.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을 윤석열에 대해서 한다면 공수처 인력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인력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이 수사와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은정 위원 국수본의 협조를 받으셔서, 인력을 협조받으셔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경호를 받겠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란수괴이기 때문에 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가 더 우선입니다. 경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현직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공수처장님께서도 체포영장을 빨리 받아서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국수본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호처에서 만일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그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됩니다. 중대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 내란수괴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란수괴가 지금 국군을 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향해 언제 총부리를 겨눌지 모릅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은 법률가로서 이 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법원이

수사를 할 거고 재판을 할 거고 지켜볼 거고 이런 말씀 하셔서는 공직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를 한다면 헌법 71조의 사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해석은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부분 해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헌법 71조의 대통령 궐위·사고 시에 직무 권한이 대행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상, 현행범인은 아니지요. 지금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따라서 윤석열을 체포하면 그것이 사고 상황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법원행정처장님도 그것에 동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말씀이……

○박은정 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해석에 일용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재판 사항이 된다고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윤석열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체포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체포를 해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 계엄을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검사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공수처든 누구든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 압수영장, 대통령실에 대한 대물 처분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의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현행법은 현장 체포가 가능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왜 그렇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증거인멸, 도주 우려, 모든 점이 바로 즉각적으로……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즉시 체포하는데 사후에 영장 청구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지금은 이런 형사법의 현장법보다 훨씬 더 위중한 내란수괴법이에요. 더군다나 국군 통수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이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신에 입각해 보면 중복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법원이 법을 따지고 뭐 한다 할지라도 중복 신청했기 때문에 이걸 한군데로 교통정리 해라 그래서 영장을 기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수사를 망치게 된다면 법원이 그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절차에 따르지 않은 이런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사법부가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정청래 아니 처장님, 중복 신청했기 때문에 기각했다라면 그중에 한 군데 내주면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위원장 정청래 예.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법률상 국수본, 즉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신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의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수사기관이 동시에 이런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모든 법관들, 특히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진중하게 무겁게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예, 알겠고요.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궁극적으로 검찰이 행한다 할지라도 인신 구속이라든가 이런 영장은 공수처와 공조를 해서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장님, 동의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이건태 위원 혹시 법무부의 출입국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지금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접수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무부의 판단으로 기각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기각했다는 보고는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체를 저한테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접수가 있었는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기각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태 위원** 접수가 있었는지 먼저 알아야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국금지와 관련된 개별적인 사항, 누가 출국금지가 됐다, 요청이 됐다 하는 부분이 출국금지 업무와 관련해서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어쨌든지 확인 가능한 부분 확인해서 지금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이건태 위원** 공수처장님, 제가 볼 때는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작심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셨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고 있고……

○**이건태 위원** 아니, 그런 문제 말고 수사 의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요점,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공수처가 그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내란죄라는 엄중한 사건에 대해서……

○**이건태 위원** 잠깐만요.

공수처가 그간에 한 번도 수사 실적을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성원이 뜻을 모아서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작심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범사위원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내란 범죄의 엄중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즉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이건태 위원** 지금 검사가 몇 사람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15명이고 수사관은 36명입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하나의 특검 정도 비슷한 인력 규모인데 부장이 몇 분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부장이 지금 3명입니다.

○**이건태 위원** 차장 한 분과 부장 한 분 그다음에 처장님, 이 간부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확실히 의사결정을 하신 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맞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그간에 진행 중인 사건들은 일단 뒤로 미루는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맞습니다. 이 사건이 되는 동안에는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건태 위원** 국수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인력이 부족한 건 맞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인력 면에서 한계는 좀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국수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는 따를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검찰에 있어서 지금 긴급체포가 되어 있고 사후 영장이 청구될 예정인데 아까 법원행정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긴급하게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첩요청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영장, 이게 압수수색영장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압수수색영장 및 체포영장이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런데 둘 다 기각됐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건태 위원 기각 사유는 협의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건태 위원 그리고 검찰이 방첩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뉴스가 나오거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군사법원을 통한 것 같습니다.

○이건태 위원 군사법원을 통해서…… 군사법원 명의로 청구했다는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군검찰을 통해서 아마 군사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태 위원 경찰은 국방부장관의 공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기사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것은 아마 국수본이 설립되자마자 미리 해 놓은 부분이고, 저희들이 6일 날 영장 청구한 것보다 조금 빨라서 발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경찰에 대해서는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준 게 확인이 됐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그런 것으로, 제한적으로……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영장이 들어갔을 때는 아마 중복 청구로 세 기관이 전부 다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행정처장님, 만약에 나중에 본안재판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되면 영장재판부가 합의를 해서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영장 단계에서 이걸 걸러 줘야지, 이 중 차대한 사건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법원의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수본, 경찰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수사권이 당연히 있는데 검찰의 경우에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 사이에도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아마 저희 법관들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쟁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영장법관들이 상의를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건태 위원 검찰의 사건 수사가 나중에 본안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면 영장 단계에서 시그널을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중복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기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수사기관한테 일차적으로 아마 경고 내지는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건태 위원 지금 통상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현법 구조를 건드는 사건이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이건태 위원** 그러면 사법부도 대등한 위치에서 발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승원 위원 등 1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52조에 따른 개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2조(위원회의 개회)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 조건이 됩니다.

개회 요구 일시는 12월 11일 오전 10시이고……

○**박지원 위원** 11일이요.

○**위원장 정청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 열하나, 11일 오전 10시이고 요구 안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입니다.

출석 요구 중인 명단은 박성재 법무부장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윤 공수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선호 국방부차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등 8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간사 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기각됐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탄핵 기각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나라보다 당 중시한 최악의 결정이다’,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다’.

○**위원장 정청래** 이성윤 위원님, 마이크 대고 좀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를 가지고 하면 안 들리지 않습니까?

○**이성윤 위원** ‘정치의 모든 것이 멈춰 버렸다’, 뉴욕타임스 ‘국민적 분노, 여당 전체를 불 지를 도박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더 많은 탄핵 요구 시위 촉발할 것’, 워싱턴 포스트 ‘여당, 대통령 구하려 결집했다’. 이외에도 전 세계 언론이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탄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젊은이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탄핵하고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권도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K-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 내란수괴 반드시 탄핵되고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제부터 법원이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습니까? 중복 청구된 것이니까 의견 교통정리 해 와라.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원이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저도 수차례 윤석열 검찰정권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도 부역한 셈 되니까 철저히 통제하라 했습니다. 한번도 못 했어요.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90% 가까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야당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발부율이 무려 98%에 이른 것도 있어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장을 분명히 표시하세요. 지금 일선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법원 지휘부에 대해서 명백히 입장을 발표하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밝혀야 국민들은 법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공수처장님, 강력하게 수사 의지를 표시했다 그러는데 인력, 조직, 예산, 포렌식 자료, 포렌식 설비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사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집중해서 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습니까?

또 처장님, 윤석열도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지요,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이성윤 위원 그런데 그 약속 지켰습니까? 처장님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은 과거 3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인력과 예산, 조직, 능력도 없는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가져다가 사실상 뭉개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윤 위원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 제한된 인력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은 파견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처장님,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부분 경찰과 협조해서 파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는 윤석열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약속해 놓고서 안 지켰어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다고 여기서 국민들께 약속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 판에 박힌 말씀 마시고요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다고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처장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은 공수처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도 없으면서 이 사건을 가져다가 사실상 뭉개 버리는 것 아니냐…… 내란 사건은 수사권도 없잖아요. 내란죄는 수사권 없으면서 갖다가 뭉개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손준성 기소해 가지고 2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관련 사건으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다고 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 기소 못 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런 식의 이첨 요청이 아닙니다.

○이성윤 위원 법무부장관님, 오늘 아침에 국방부에서 지금도 법적으로는 윤석열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에 대해서 직무집행이 부적절하다, 직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바로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가 만나 가지고 연합을 했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승원 예.

○이성윤 위원 그러면서 탄핵은 불확실하니까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질서 있는 퇴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는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따른 퇴진을 주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적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바로 탄핵입니다. 또는 본인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용산 내란수괴라고 질책받는 사람은 오늘도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요.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질서 있는 퇴진은 자진 사퇴와 그리고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말씀하시는 그런 조치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헌법적 제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저번 금요일 질의 때 계엄사의 5급 사무관 파견 요청에 대해서 12시 50분에 요청, 그즈음 요청을 받으셨고 간부회의에서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다, 그리고 네 가지의 의문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법적으로 어찌 되었건 계엄령 선포 시각인 3일 22시 28분부터 4일 05시 01분 해제 선포하기 전까지,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는 사실상 계엄령의 법적 효력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장경태 위원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05시 01분 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5급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1시 즈음에 있었던 간부회의에서 법적인 구성요건이 부족하다, 이 비상계엄이 사실상 위법·위헌하다라고 법원에서의 입장과 판단이 정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드린 것……

○장경태 위원 그러셨다면, 2시에 퇴근하셨다고 하셨는데 05시 01분까지는 대기하시다

가 계엄령이 해제되는 것을, 국무회의 의결되는 것을 보시고 퇴근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말씀……

○장경태 위원 혹은 그 이후에 간부회의를 한 번 더 하셨어야지요, 05시 01분부터 06시 01분까지라도.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2시 50분쯤 갔을 때는 이미 국회에서 해제를 위한 소집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에서 그 정도의 입장을 정리하셨으면 왜 입장을 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계엄법에, 국회에서 저희가 1시간 만에 다행히 150명 이상이 모여서 망정이지 만약 못 모였으면, 저도 담 넘다가, 국회의장부터 해서 다 담 넘었잖아요, 국회의원이.

나중에 경찰청장 오면 당연히 또 묻겠지만 만약 저희가 이 해제 결의안을 통과 못 시켰으면 법원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거기에 대해……

○장경태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계엄사령관이 지휘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엄법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처장님 그러면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휘 받으셨어야 됩니다. 받으셨을 겁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국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신 데 대해서……

○장경태 위원 아니, 국회가 못 모였으면요? 그래서 계엄법에도 최소한 국회는 침탈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현재도 가만히 있고 대법원도 가만히 있고 그냥 국회만 다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무슨 군인입니까, 5분 대기조처럼 소집되어 가지고? 물론 국민을 위해 싸워야 되지만…… 그런데 국회 비상계획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지키려 와야지 당사를 지키려 가는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참여도 못 하고.

아무튼 저는, 법원행정처가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최소한 삼권분립의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기해 주셔야지요. 국회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 1시 1분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할지라도 간부회의 소집 해제 이후에, 간부회의 해산 이전에 새벽 2시에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맞다. 지금 계엄 요건도 의문이 있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의문이 있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서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빨리해야 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저희대 대법원장 나오셔 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법과 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 보겠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집에 퇴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법원행정처가 진짜 그 정도 노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장경태 위원 공수처장님, 지금 제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만에 하나 국군병원에서 뇌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란죄에 대한 형 감경 사유가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그런 사태까지 생각할……

○장경태 위원 아니, 만약에 국군병원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판정 할지 모르지만…… 지금 계엄사 법무실장도 교체한 과정이 아주 위법한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따져 물을 텐데요.

만약에 질병으로 인한 대통령 유고를 선언하고 갑자기 입원 치료를 받겠다고 국군병원에 들어가고요. 총리 대행을 하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구속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런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내란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위해서 국군병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어찌 됐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계엄령 선포 시에 법무, 국방, 기재, 행안의 서명을 받고 국무총리의 부서를 받도록 한 것은 계엄령 선포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라,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기본적 동의 절차는 최소한으로……

저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승원 예.

○장경태 위원 최소한의 동의는 거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연명도 안 받았고 부서도 없었다면…… 정말 주요 부처 장관들 아니겠습니까, 기재와 행안, 국방, 법무? 만약 대통령이 주요 부처의 연명도 안 받고 했다면 그것은 어떤 사안이 되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국무회의에서의 심의 참여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차피 이 사건 수사에서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잘 수사해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검토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법무부장관님, 본인은 이 내란 혐의의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구경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피해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대통령이 막 무자비로 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위원 3개 다 아니시고. 그러면 뭐니까, 도대체?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어떤 자격으로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까? 계엄령 선포 시에 그냥 대통령 의견 경청하러 가신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전부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막으셨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막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직을 걸고라도 계엄령 선포 시에 그 회의를 나오셔서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법무부장관 사퇴하겠다라고 외치셨어야지요. 그래야 김재규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오늘은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다 큰소리로 절규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민일보 창간 기념 여론 조사를 한국갤럽이 했는데 긍정평가가 11%, 부정평가가 86%입니다. 우리 국민의 열 사람 중 아홉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질서 있게 하라고 헌법이 있고, 헌법과 국민은 윤석열을 하야 혹은 탄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염려하고 있는 것은, 중복되니까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물론 처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지만 시행령으로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경찰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공수처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박지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해 줘야 도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지원 위원 그렇다면 법원이 이 중차대한 비상시국에 중복되니까 영장 기각했다 하면 국민은 똑같이 법원을 내란 방조 세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을 존경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내란죄에 대한 영장은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각을 하더라도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서 수사하는 영장에 대해서는 발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상황 인식을 저희 법관들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 저희들도 충분히……

○박지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복되니까 영장을 다 기각했다 하니까 얼마나 우려를 해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처장님,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당에’, 즉 ‘국민의 힘에 모든 권한을 넘긴다’.

한동훈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누구예요,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윤석열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박지원 위원** 윤석열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는 대통령 노릇 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으니까 싹 도망쳤어요.

한동훈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비겁하냐 하면 계엄령 발부하면서 체포한다 하니까 국회 본회의장으로 도망쳐 왔더라고요.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본회의장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당에 위임했다, 대통령 노릇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법부에서는 최소한 표현을 해 줘야 국민들이 이해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검찰 수사는 괴물이 돼요. 지금 갑자기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짐작은 합니다만……

○**박지원 위원** 보세요. 제가 보면,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초에 검찰은 전 대통령,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넘어가면 현 정권, 현 대통령 세력을 잡아다가 검찰 개혁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하고, 특수본 구성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대통령이 알고 풀썩 주저앉았다는 데.

검찰, 일 제대로 할 거예요? 믿어도 되나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제가 지금 지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검찰총장 중심으로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오케이.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공수처장, 도대체, 채 상병 수사 제대로 했어요? 명태균 황금 폰이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김건희 핸드폰은 다이아몬드 폰이다.

압수수색했어요? 그것 하지도 못하고 이제 와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그런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는데요……

○**박지원 위원** 여보세요!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 나고 국민 여론이 하니까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그렇지 않습니다.

○**박지원 위원** 당신은 밤낮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이 합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공수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합동수사단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처장도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저희들은 인력을 대폭 파견받는 게 제일 좋고, 우리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합동수사본부 형태로 되는 게 법상으로 그렇게 원만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법사위 회의 마치고 나가자마자 국수본과는 어떻게 연락하고 논의할 생각이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어쨌든 저희들이 이첩 요청을 한 마당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김승원 위원 아니, 수사기록 이첩만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경찰에, 국수본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첩 요청……

○김승원 위원 경찰 국수본에다가 합동수사 하자고 요청을 했다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아니요, 이첩 요청을 했으니……

○김승원 위원 아니, 그것은 이첩 요청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거기에 대한 답으로 국수본에서 반응을……

○김승원 위원 일단 질문을 들으세요.

박지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함께 수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승원 위원 사건 관리 규정인가요? 사건 규칙 보니까 압수수색영장은, 특히 통신내역영장도 경찰이 신청해서 공수처가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협조하면 되는 거고. 다만 인신 구속에 관한 체포라든가 구속영장만은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독자적인 이름으로 해야 된다 지금 그렇다는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승원 위원 그렇다면 아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지시 및 영장 청구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 국수본과 잘 협의하면 합동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나가자마자 어떻게 논의할 거냐고 제가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무슨 검토를 언제까지 해요,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바로 그런 부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김승원 위원 그것을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법사위에? 그것은 국민께도 알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보고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해서 그나마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 면직시켰지요, 의원면직이라는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장관급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했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국정원 홍장원 1차장인가요? 이번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양심선언 한 사람을 교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직 해임하고.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데.

아니, 뒤에서 인사권 다 행사하면서 무슨 2선으로 후퇴를 하고 자기는 국정에 관여를 안 하겠다는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또 뻔뻔스럽게 합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급한 시기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첫 번째가 전쟁이고 두 번째가 경제 아닙니까?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내란 세력들이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속 시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한시가 급한데 언제 또 무슨 평계를 대고 전쟁…… 지금 국군 통수권이 아직도 대통령한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그것을 갖다가 뺏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경제 아닙니까? 지금 보도 보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외국자본이 1조 원 이상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다면서요. 또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151조가 필요하다는 경제부총리의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국민들은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서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데 비상계엄령 난동으로 인해서,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더 어려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해외 정상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느냐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대통령을.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라든가 이것도 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여기 세 분들은 도대체 그런 것을 알고 계시는 건지, 그런 대급함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상계엄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민의 몇 %가 지금 지지하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쳐장님 알고 계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대부분 지지를 하지 않고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87%라고 나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인지 압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김승원 위원** 법무부장관님은 혹시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승원 위원** 몇 %라고……

○**법무부장관 박성재** 십몇 %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위원** 11%!

○**법무부장관 박성재** 11%.

○**김승원 위원** 11%. 그런데 오늘만 조사한 것은 한 자릿수대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니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린 겁니다. 저도 웬만하면 씨라는 말을 안 붙이는데 정말 윤석열 씨가 됐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런 현실을 세 분께서 좀 인식하셔서, 세 분은 각 기관의 수장이기도 하시지만 또 지

금까지 법률적인 일을 30년, 40년 가까이 해 오신 분들인데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해석 문제라든가 이런 것 하실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 분은 경륜이 있으시니 국민께 안심시켜 드리고 또 30년 이상 법조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어떤 대안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복 신청해서 기각했다는 얘기를, 행정처장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하십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렇게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켜야지요. 전쟁 안 날 것이다, 경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격 다시 예전처럼 돌릴 수 있다고 하셔야지요. 지금 10대, 20대, 30대까지 광장에 나와서 이 추운데 계속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김승원 위원님 말씀에 잠깐 짧막하게만 말씀을……

○위원장 정청래 예, 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중복 청구에 따른 기각 문제는 최초에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했던 것처럼 아마 처음 신청했던 것만 발부되고 나머지는 중복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발부하지 못한 그런 고민이 배후에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의 엄중함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법무부장관,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그쪽에 좀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정말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라는 노래입니다. 12월 3일 그 공포의 서울의 밤을 규탄하는 이삼십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잠깐 보신 겁니다.

잠깐 가사를 소개해 드리면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 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언제까지라도 함께 가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라는 가사입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것을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의 미래를 개척해야 될 어른들이 헌법도 어기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명을 도륙하려고 했던 그 분노, 살 멀리는 노여움까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희망으로 지금 승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헌법 제77조 1항에 나오듯이 전시 상황입니까, 사변 상황입니까, 준전시 상황입니까? 계엄을 왜 선포해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안 된다, 그러면 수많은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말렸어야지 한마디 못 하고 여기 와서 이런저런 변명 하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공수처장, 생명의 위협을 느껴 본 적 있습니까? 저희 국회 의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본회의장으로 모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학생운동 시절 안기부에 끌려가 가지고 4시간 동안 수건으로 눈 가린 채 죽도록 맞았어요. 이번에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저 정청래, 다 끌려가 가지고 고문·폭행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안나온 여야 위원들 모두 다 끌려갔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천만한 짓을 해 놓고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있으니 영장을 중복 신청해서 영장 발부를 못 했느니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일 위험한 것이 윤석열이에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즉시 출국금지, 계좌 동결, 즉각 체포, 구속,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다섯 살짜리 꼬마가 권총 든 격이라고 명태군 씨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언제라도 국지전을 다시 일으켜서 제2의 비상계엄을 또 할지 몰라요.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국군 통수권자는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 씨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군 통수권자가 내란수괴 피의자입니까?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희망을 꺾지 마세요. 어른들이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하고 응징해야지요. 그래야 응원봉을 들고 저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볼 면목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란수괴를 당장 체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불안은, 코리아 리스크는 제거되지 않아요.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경찰, 어디가 수사한다, 어디가 주도권을 준다, 어디가 내 밥그릇 쟁기겠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 들이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중요한 일이지!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꺾지 마세요. 그 알량한 밥그릇 싸움 하지 마시고 당장 윤석열 출국금지, 체포, 구속,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밭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장면 보고 있으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시에 의총도 있고요 타워법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좀 바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출입국 상황을 장관님께 물어봤는데요 그것만 좀 확인……

○**위원장 정청래** 출국금지 확인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출입국본부장 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마이크대로 잠깐 나오세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출국금지 됐습니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누구 말씀, 대통령……

○**이건태 위원**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온 적이 있는지?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있습니다.
- 이건태 위원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출국금지 요청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요청 내역…… 제목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건태 위원 어느 기관에서는 누구를……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공수처, 검찰, 여러 군데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방금 공수처장께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수사 지휘했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기사도 다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 위원장 정청래 예.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출국금지 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출국금지 했습니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 위원장 정청래 언제 했습니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5분, 10분 전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씨는 출국금지 당한 거지요?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박지원 위원 잠깐만요.
-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는 심사하지 않고 그대로 해 주는 거지요?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굉장히 형식적 요건이 되어 있는지만 저희가 간단히 하고, 예를 들면 가령 이미 출국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오류만 없으면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은정 위원 아니, 빨리하지 오늘 이제 와서 여기 법사위에서 얘기하니까 5분 전에 합니까, 출국금지를?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그게 아니고 공수처에서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건태 위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출국금지 되어 있습니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예, 방첩사령관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 공수처장님은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수사 지휘를 언제 했습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여기 오기 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는 했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 안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이 사건 관련해서요?

○위원장 정청래 아니, 윤석열…… 부부잖아요. 혹시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안 했냐고요.

○서영교 위원 하셔야 돼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검토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해야 돼요. 연루되어 있어요.

○이건태 위원 아니, 기존의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 말고라도 기존의 사건. 그러니까 사건을 연관 지어 보면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가 되어 있으면 부부니까…… 다른 사건이 있잖아요. 다른 사건 가지고 계시잖아요.

○서영교 위원 당장 출국금지 신청하세요.

○박은정 위원 아니, 법무부에서 직권으로 하면 돼요, 직권으로.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위원장 정청래 공수처에서 윤석열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수사 지휘하니까 바로 출국금지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수사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 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부터 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5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은 소위 김호중 방지법, 술타기 법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9항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법은 순직 군경 가족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이제 이석할 순서인데 혹시 세 분 못다 한 얘기 있으면 짧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공수처장 하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없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1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지금은 그냥 가야 될 시간인데요.

○서영교 위원 제가 공수처장님한테 요구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출국금지 시켰고, 김건희 출국금지 시키시고요. 지금 명태군 사건도 연루되어 있고 채 해병 사건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내역, 통화내역이 아주 중요한데요 윤석열·김건희 핸드폰 암수 수색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서영교 위원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라 하니까, 아까 법원행정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지금 김용현 피의자의 신병과 관련해 가지고 긴급체포를, 사실은 저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 신청했는데 중복 수사로 인해 가지고 기각된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금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시민사회도 그렇고 법사위에서도 적법성 여부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등으로 해서 위법성이 본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등등 그런 적법절차 그다음에 진실 추구를 위해서 공수처는 여하튼 가용 인력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오동운 처장님은 이석하시고 박성재 장관님, 천대엽 처장님은 잠시 이석하셨다가 이후 고유법안 상정 시 다시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타 상위 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3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 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7)
 1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91)
 12.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98)
 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6)
 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5)
 15.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1)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4)
 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2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2)
 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2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15시54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37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지난 전체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9항을 제외한 27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37항까지 국방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의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으므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가보훈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는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고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 추천 4명을 포함하는 것은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특별재심제도는 확정된 종국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법률안들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종철 병무청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 연원정 인사혁신처장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공무 해외 출장으로 인해 차장의 대리 출석을 위원장이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9항은 지난번 타 부처와의 이견으로 계류되었습니다만 현재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어 다시 상정하였으며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7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22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과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두 법은 오늘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항과 22항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다른 법과 동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3분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조지호 경찰청장, 질의하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조지호 청장은 내란죄だ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12·3 내란 사태,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위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위헌·위법의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경찰이 출동한 것은 위헌·위법으로 무효인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근거가 없이 출동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지호 청장, 이 위법성 언제 인식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위법성을 언제 인식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전현희 위원 언제 인식했는지만 답변하십시오.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현희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을 해 주십시오.

언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전현희 위원 언제 인식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22시 30~40분 사이에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와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참모들한테 지시 안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전현희 위원 당시에 조지호 청장은 계엄령 선포 10시 28분 이후 10시 46분에 국회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지금 이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고 이게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이 부분이 조지호 청장이 내란죄에 가담

한 주요 혐의입니다.

또 그때 당시는 몰라서 이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TV를 통해서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무장한 계엄군에 의해서 국회가 점령당한 것을 확인하면 적어도 이것은 위현이다 위법이다라는 것을 보통의 사람이라도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병력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위법을 저지른 셈입니다.

방첩사령관한테 전화가 왔다 했는데 당시에 방첩사령관이 위치추적을 요청을 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전현희 위원 위치추적을 요청한 주요 인사는 누구누구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그것 그 당시에 적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 줄 수 있는 것도……

○전현희 위원 누군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기억나는 사람 누구라도 얘기를 해 보십시오.

○경찰청장 조지호 언론에 보도됐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지금 봬니까 위원장님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 정도 기억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현희 위원 대통령 전화는 받았습니까?

○서영교 위원 다 말하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고 확인하면 제가 기억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위원장님 보니까 위원장님 생각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왜 들어갔지 하고 생각했던 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그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관련해서 대통령의 전화는 받은 적 없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철래 경찰청장!

○서영교 위원 한동훈 있었잖아요, 한동훈.

○경찰청장 조지호 한동훈 대표는요 처음에 불러 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전화 와 가지고 1명 추가라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정철래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저 보니까 생각이 나요?

○경찰청장 조지호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정철래 무슨 생각이 납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그때 불러 줬던 명단에 위원장님도 포함이……

○위원장 정철래 체포 대상자에 제가 포함돼 있다라는 것이 지금 생각납니까, 그때도 기억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적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을 소환하라고 하시면 15명의 명단을 제가 사진 찍듯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위원장 정청래 알았어요.

그런데 왜 저를 체포하지 않았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체포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체포를 위해서 위치추적을 좀……

○위원장 정청래 아니, 위치추적 한다는 것은 체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고 체포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체포를 위해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청래 경찰청장!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위원장 정청래 변명 좀 하지 마시고.

방금 전현희 위원 질의에 답변을 10시 40분경에 위법인지 인지했다고 그러는데 위법인지 인지한 이유가 뭐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아니, 위치추적을 해 달라는 데 위치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 달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가, 한다는 게 불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청장!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위원장 정청래 불법인지 인지했으면서 위법인지 인지한 같은 시각에 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를 또 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국회를 통제하라는 게 아니고요. 국회에 여러 가지 우발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회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제하려고 했으면……

○위원장 정청래 청장!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이 나중에 그걸 풀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청장, 본인이 지금……

○이성윤 위원 아직도 반성을 못 하고 있어요.

○장경태 위원 국회의원 신분증을 보여 줬는데도 막았다니까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 계세요.

○장경태 위원 몸싸움한 영상 다 있어요!

○위원장 정청래 잠깐만 계세요.

위법인지 알았고 이재명, 정청래 등 위치 파악하라고 한 것은 체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위법인지 알면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라고 지시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에요!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위법인지 알았으면 전면 통제 지시가 내려왔어도 경찰에게 즉각 철수해라, 이런 비상계엄 내란에 경찰이 동원될 수 없다, 공범이 될 수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위법인지 알았다면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겁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균택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박균택 위원** 그 위치에 계시면 대통령의 또는 계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실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방첩사령관 요구에 제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균택 위원** 출입 통제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출입 통제는……

○**박균택 위원** 제가 국회를 들어오고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거기를 뚫기 위해서 지금 목이 다 쉬었어요. 경찰도 부역한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은 처음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단 통제를 했다가 이것은 좀 아닙…… 국회 출입자들의 출입 요구가 있다는 서울청장 보고를 받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회 상시 출입자, 국회의원, 사무처 직원, 보좌관들 그다음에 기자까지 출입 허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도 청장님의 위치에 있으면 애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국가수사본부의 내란 범죄 수사에 혹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원래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를 못 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

○**박균택 위원** 그래도 후배들에게, 하급 계급자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부터 국가수사본부장 이하 관련되는 국장 이하는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어쨌든 군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저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예, 제가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박균택 위원** 지금 김동혁 검찰단장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균택 위원** 그 인물이 지금도 검찰단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현재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박균택 위원** 국민의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고, 거기가 있는 한 내부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대로 두셔도 괜찮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현재까지 직접 확인한 사항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개입한 것이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박균택 위원** 그전에 너무 많은 불신을 받고, 채 해병 사건 때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려고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이 내란죄 사건 직무에서라도 배제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것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현재 이 관련된 군검찰의 수사에 검찰단장이 개입된 것은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래** 위원님들, 3 플러스 1분까지 하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경찰청장, 잘못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잘못했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 국회를 막으려고 한 것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하겠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명백하게 확인드릴 수 있는 것은 경찰을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서영교 위원** 그러면 윤석열은 경찰을 동원하지 않았는데 경찰청장이 국회를 막으라고 동원한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 상황에서……

○**서영교 위원** 국회를 막지 않았다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 상황에서 국회로 암박이 오는 것은 저희 경찰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 뭘 다 이해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비상계엄령이 떨어졌는데 그게 내란에 준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해제를 시켜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들어왔는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도착하니까 경찰이 ‘모두 막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을 넘어가는데 뒤에서 경찰이 잡아당기고, 넘어가는데 경찰이 못 넘어오게 하고. 이것은 다 누구에 의한 지시입니까? 내가 경찰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국회의 기능을 이 중요한 시기에 막았어요. 막아서 해제시키지 못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수장에 경찰청장이 있었던 거예요. 조지호라고 하는 경찰청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란죄 공범입니다. 맞지요?

책임을 진다고요? 무슨 책임을 지겠어요. 경찰청장 그만두는 책임이요? 아니면 이 범죄에 대해서……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자리에 연연하……

○**서영교 위원** 자리에 연연…… 자리가 아니에요!

○**경찰청장 조지호** 자리에 연연할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사, 일단 제가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이 되어 있는 이상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서 수사에 제가 정말로 성실하게 임할 겁니다.

○**서영교 위원** 성실하게 임할 게 아니라 국수본에서는 당장 조지호 경찰청장 체포해야 해요.

○**경찰청장 조지호** 필요하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 윤석열 출국금지 시켰듯이 가서도 이야기하세요. 나에게 출국금지 시켜라, 그리고 나를 당장 체포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상태에서 수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서영교 위원 선관위원들이, 선관위 관계자들이 감금됐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서영교 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서영교 위원 감금되었으면 이것 온 세상에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중히 촉구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엄중히 뭘 촉구했어요? 이 관계자들 다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게.....

○서영교 위원 선관위에 와서 사진을 찍어 갔어요. 사진을 찍어 가는 행위는 뭐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사진을 찍어 가면 방첩사가 나중에 거기를 해킹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얘기는 들어 봤어요, 안 들어 봤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부정선거.....

○서영교 위원 그것 검토해야지요. 해킹당할 수도 있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예.

○서영교 위원 그것 검토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검토하고, 도대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왜 선관위에 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명태군에게 여론 조작을 시켜서 대통령후보가 됐고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도 여론 조작을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는지도 우리가 의문입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세요. 과연 혹시 증거를 인멸하려고 간 것은 아닌가. 도대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방부차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서영교 위원 오늘도 707단장이 양심선언 했어요. 부대원들을 지키겠다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지켜 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총이라도 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를 띠웠다고 합니다.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김용현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보고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침에 707단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들었고, 아마 지휘관으로서 현장에 투입됐던 부하들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논할 바는 없고.

무인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사안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이건 내란죄를 넘어서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서영교 위원** 전쟁을 유발시켰다면 엄청난 범죄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문 과정에서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오늘 특임단장이 울먹이면서 기자회견 하는 것 들었는데……

차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정청래** 이 특임단장, 군무이탈 했다고 해서 또 처벌하고 그럴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사실 제가 관련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또 엄중한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부대 위치라든지 이동 이런 것은 상급 지휘관한테 분명히 승인을 받고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지시를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제가 다시 좀 더 판단,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차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정청래** 지금 국가비상사태고요. 그리고 국토방위에 열중해야 될 우리 장병들이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와 그리고 지시로…… 그 장병들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특임단장은 그 부하들의 피해를 막고자 본인이 피해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처벌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고, 지금 누가 누구를 처벌한단 말이에요? 대통령까지 출국금지 당하고 곧 체포·구속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지시하고 명령한 사람이 잘못이지, 그 잘못된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또 처벌하겠습니까? 그것은 정상참작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왜 답변을 못 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거기에 맞춰서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

원장님 말씀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치벌하면 안 됩니다.

○장경태 위원 차 돌리라고 한 사람 누구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예?

○장경태 위원 차 돌리라고 한 사람 누구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국방부에. 단장한테 전화해서, 기자회견 하려 가는데 차 돌리라고 한 사람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청래 확인, 지금 해 줄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위원장 정청래 국방부 뒤에 와 계신 분들 확인해 가지고 장관에게 쪽지를 전달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시는 분이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김선호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은정 위원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국회의원이 테러리스트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닙니다.

○박은정 위원 윤석열 내란 당시에 국회 봉쇄하기 위해서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대표적인 대테러 부대입니다. 이분들 이름과 얼굴은 보안이고 테러 대처 역량이 세계 정상급입니다. 특전사의 특전사가 바로 707특임단입니다. 그런 부대가 김용현·윤석열 내란수괴의 내란 도구로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12·3 내란으로 인해서 이분들 얼굴이 노출됐고 개인 병기와 부대 편제, 작전 전개 방식까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됐습니다.

차관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이 동조한 내란의 결과를 보세요. 코스피는 2400p를 내줬고 시가총액은 5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환율은 급등했고 외국인은 한국에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군이 국회의원 체포에 성공해서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이 안됐다면 특수전사령관과 그 산하, 내란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지휘관들 모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저렇게 사진 찍고 승진하고 영전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저기서 저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사진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어떤 사진이지요, 저것? 저기 전두환 보이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은정 위원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모이면 안 된다. 끌어내라’…… 대법원은 전두환의 비상계엄과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국헌문란의 내란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차관님, 우리 군이 주도한 내란으로 국격이 나락으로 잣습니다. 세계 언론이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있고 김용현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에서 조차……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윤석열 상태가,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해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방부 발표대로, 군 통수권은 헌법이 정한 대로 대통령 윤석열에게 지금 있는 것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차관님, 윤석열 내란수괴가 지금……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에 군 통수권 행사하면 지금 그 명령 받아들이실 건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돼 다시 국민에게 또 무력을 행사하는 이런 지시를 하면 제가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정 위원** 군대 동원하고…… 군대에 대해서 지휘명령을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또다시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에는 제가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요, 군과 관련된 대통령의 군 통수권, 지휘명령에 대해서 윤석열 지휘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한동훈·국민의힘 지휘를 받을 것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만약에 적에 의한 안보상의 심대한 위협이 정말 발생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박은정 위원** 대통령이 지금 이양했어요, 국민의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동훈·한덕수에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지금 어떤…… 저희들은 그것이 이양됐다는 어떤 헌법적인, 법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한덕수·한동훈이 지금 국정을 운영한다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저것은 반헌법적인 조치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와 가지고 국정 운영, 대통령 직무 배제하고 한다는 건데…… 그러면 차관님은 지금 한덕수·한동훈 두 사람의 담화에 따른 국정 운영을 자신들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저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규정해 주지 않는 한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수권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탄핵해서 반드시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군이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휘를 받아서 군대가 지휘명령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래** 지금 국방부차관이 매우 중요한 발언 하셨는데요, 또다시 이런 불의한 그리고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느냐면 국지전이라도 일으켜서 전쟁 상황이 되면 군 통수권자가 윤석열인데 그리고 내란수괴 현행범인데 과연 이 지시를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장님, 국지전이라는 것은 군사적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합참을 통해서 정확하게 군사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런 군사적 위협이나 그런 판단이 없는데도 그것이 있는 것처럼 해서 지시를 하시면 제가 그것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군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을 때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서 저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위험천만한 다섯 살짜리 권총을 든 꼬마 내란수과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하루빨리 회수해야 되고 그러려면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이건태 위원** 한덕수, 한동훈 대표가 공동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준 탄핵권을 팔아 가지고 내란의 수괴 윤석열의 대리인 한덕수하고 정치 협작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러면 한덕수·한동훈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국방부에 ‘내가 오늘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앞으로 한덕수 총리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면 군 통수권 행사에 있어서 아까 말한 북한과의 교전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의 말을 들을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대통령님께서 총리님한테 위임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구두로써 정해져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것 또한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한테 귀속됐는데 대통령 웰위 상태가 아닌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물건이나 권한인 것처럼 총리한테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님이 그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실 수 없을 때 총리님께서 그 권한을 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조건이 되지 않은 가운데 구두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임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은 제가 법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지금 군검찰과 일반 검찰이 협력하고 있습니까? 합동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건태 위원** 방첩사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명의가 군검찰입니까, 아니면 일반 검찰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수사 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주체를.

○이건태 위원 아니, 방첩사를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군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렇지요. 군검찰……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 군검찰이 아니라 검찰 특수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인데 영장의 명의가,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한 명의가 군검찰인지 일반 검찰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것 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검찰뿐만 아니라 국방부조사본부 구성원도 특별수사본부에 파견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닙니다. 조사본부 요원은 없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러면 군검사들만 파견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군검찰 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1분만……

○위원장 정청래 예.

○이건태 위원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이건태 위원 왜 일반 검찰로 파견을 하신 거지요? 군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하시면 되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군검찰은 그 관련돼서 내란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는 영역이 아니고 검찰 쪽에서 거기에 대한 수사 협조 의뢰가 저에게 왔었고 제가 군검찰을 파견해서 합동수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 같이 합동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런데 내란죄는 일반 검찰에 수사권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군검찰도 내란죄는 없습니다. 현재는 방첩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아니, 군사반란죄는 방첩사가 수사권이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방첩사가 있습니다, 방첩사가.

○이건태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왜 파견을 하셨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마 그것은 내란죄인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데 있어서의 법리적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협조 요청에 응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건태 위원 그 법리 검토를 국방부의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이건태 위원 그 법리 검토를 국방부의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했습니다. 제 법무 참모들과 같이, 제가 조언을 받아서 제가 결정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태 위원 조언을 누가 했냐고.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저희가 법무실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희 국방부 법무실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 군검찰단장, 지금 현재 군검찰단의 김 누구지요?

○박은정 위원 김동혁.

○이건태 위원 김동혁 검찰단장의 조언을 받은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김동혁 단장에게도 같이 조언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하고 같이 조언을 받아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이성윤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토요일 탄핵 기각에 대해서 외신 반응이 이렇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심지어 ‘나라보다 당을 중시한 최악의 결정이다’, 국민의힘이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12·3 내란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됐어요. 아까 박은정 위원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북한마저도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다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국방부차관님, 아침에 여당 의원이 이런 방송을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 공개적으로 안보일 뿐 여전히 국정 운영하고 계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대통령님이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국방 관련해서 일체 용산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안보실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대통령이 권한 행사 일체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고를 왜 합니까? 내란수괴한테 왜 보고를 합니까, 군 내 상황을?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그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지되거나 정지됐다라고 저희들 스스로 규정하고 단정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성윤 위원 저희 국민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돼야 되고 당장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국지전을 일으킬까, 전쟁을 일으킬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다 보고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성윤 위원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이성윤 위원 보도를 보니까 방첩사에서 계엄 여섯 달 전부터 경찰과 합수본 설치 협약서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언론에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위원 자료도 있잖아요. 6개월 전부터 이미 합수본 설치에 관해서 협약서를 맺었고……

경찰청장님, 맞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합수본 설치와 관련된 협약이 아니고 일반적인, 평상시에 수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군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이성윤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이렇게 협약서 맺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계속 업무 협조는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윤 위원 하필이면 왜 6개월 전에 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제가, 경찰청 차원……

○이성윤 위원 미리미리, 정권 출범해서 하든가, 옛날부터 하든가……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님, 그것은 국가수사본부하고 방첩사하고 한 거라서 저희가……

○이성윤 위원 경찰이 한 거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어쨌거나 경찰이 한 것은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참……

국방부차관님, 저는 아침 보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분만 주십시오.

국회의원 체포조에 HID가 들어갔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성윤 위원 여기 오실 때 도대체 뭘 확인하고 오신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이성윤 위원 계엄 언제 한지도 모른다, HID도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시려면 최소한 그게 맞는지 보고를 받아 보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이 지금 수사……

○이성윤 위원 그러면 HID가 뭐 하는 부대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임무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특수한 임무를 하는 부대입니다.

○이성윤 위원 북파공작원이잖아요. 요인 암살, 납치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납치해서 암살하라고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

○**이성윤 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군인들 훈련시켜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암살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차관님이 올바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러서 이것 먼저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서 도대체 국회에 왜 HID를 보냈냐, 왜 요인암살조를 보냈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그것은 아마 수사할 때 밝혀질 거고 제가 그런 것을 수사하는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이게 수사입니까? 왜 보냈는가는 알 수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것이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성윤 위원** 당장 확인해서, 이것 오전에 보도된 거예요. 확인해서 국회 법사위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장경태 위원**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장경태 위원** 707특임단장한테 돌아오라고 한 사람 누구인지 확인하셨습니까, 뒤에?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직 안 되나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장경태 위원** 김동혁 군검찰단장 면담해서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셨지요?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직……

○**장경태 위원** 법적 효력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법적……

○**장경태 위원** 감찰 지시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장경태 위원** 면담으로 하실 게 아니고요. 차관님하고 면담한 것 법적 효력 없습니다. 감찰 지시하셔서 정확하게 속기록 남기십시오. 아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

○**장경태 위원** 아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면담하면서, 누가 믿습니까, 그것을? 지금 면담 다 뒤집고 있는데,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차라리 707특임단장은 자기 부하들 살리기 위해서 양심선언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장군들이 다 왜 이럽니까? 저는 임성근 사단장부터 너무 실망스럽

습니다.

방첩사 법무실장 계급이 뭐니까, 일상적으로?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죄송합니다. 제가 계급은 대령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현재는 대령이겠지요. 확인해 보세요, 뒤에. 보고할 사항 없으세요? 원래 원보직, 사령부의 원래 원보직, 이 법무실장은 중령급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원보직을 체크를 못 했는데 지금 현재 보직된, 대령급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원보직은……

○**장경태 위원** 지금 원법무실장, 방첩사 법무실장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올해 4월에 부임합니다. 교체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장경태 위원** 그것도 계급을 올려서.

윤비나 법무관, 육사 출신이지요? 60기던데, 대령급.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매우 친밀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 뜬금없이 중령급이었던 방첩사 법무실장을 올해 4월에, 그것도 진급까지 시켜 가지고 대령급으로 교체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 대령 진급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지금 동기 육군 법무관들 다 소령, 중령입니다. 왜 이 윤비나 대령만 방첩사 법무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승진시켰는지 이것 해명하셔야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방첩사에서 사실상 계엄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하고 친한 법무실장 다 넣어 가지고? 중령급 인사 보직을 왜 대령급으로 인사를 합니까? 계급으로 찍어 누르기지요, 임기도 안 끝난 법무실장을 무리하게 교체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파악 안 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과 같은 인사 조치는 사령관의 영역이었는데 그런 것을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장경태 위원** 파다합니다, 지금 제보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이유들 또 다 같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다 소령, 중령인데 왜 이분만 대령으로 진급을 합니까, 이렇게 급하게 작년 12월에? 그리고 나서 그것도 방첩사의 법무실장 보직, 이게 말이 됩니까? 사령부 법무실장 보직이, 우리 다 군대 안 갔다 왔습니까? 사령부 법무실장이 대령급이 어디 있습니까, 연대장이? 육군 법무실장도준장인데 사령부가 대령급이 하는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님, 제가 그 사실을 이 관계에 대해서 나온 것에 있어서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 맥락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확인 꼭 해 주시고, 이것 다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장경태 위원**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텐데요. 무슨 권한으로, 제가 국회의원 신분임을 밝히고 국회의원증도 보여 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의 위법

성, 포고령의 위법성 다 차치하더라도 포고령, 23시 30분에 발효됩니다. 그런데 23시 30분 전에는 무슨 권한으로 막으신 거예요?

○경찰청장 조지호 23시……

○장경태 위원 그것은 경찰청장이나 시경청장, 무조건 책임지셔야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23시, 저희들이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해서……

○장경태 위원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찰청장 조지호 국회의 상시 출입자들은 출입을 허용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안 했다니까요. 저 담을 넘어왔습니다. 담을 넘어서도 경찰이 실랑이 벌이고 저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걸 다…… 제가 동영상도 있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지시해 가지고……

○장경태 위원 수사가 본격화되면 제가 제출할 겁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위에도 제출한 자료인데 서울청장이 직접 무전하는 내용에, 23시 7분경에 직접 무전을 합니다. ‘국회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해라’, 서울청장이 직접 무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왜 막으셨냐고요. 23시 07분에 왜 막으셨냐고요?

하급 경찰관을 제가 이름 다 적어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시에 위법 부당하게 응하지 않은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님, 제가……

○장경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처벌받으셔야 돼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책임자나 현장 경찰관은 제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그것은 책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경태 위원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도 국회 경내에서 막았다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23시 7분에 서울청장이 직접 무전을 해서 국회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해라……

○전현희 위원 10시 46분에 통제했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적으로 관리를…… 우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장경태 위원 아니, 경내에 제가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경내에서 막았다고요. 그게 무슨 권한이야? 포고령 선포 전에…… 포고령 제가 얘기도 안 하잖아요. 포고령 선포 전에 왜 막으셨냐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장경태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했는데,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국회 상시 출입자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 가지고 ‘그러면 출입을 허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장경태 위원 그러면 일선 경찰관이 임의로 마음대로 막은 겁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데 서울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장경태 위원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막냐고요. 그러면 일선 경찰관이 처벌받으셔야겠네요? 지시불이행이에요?

○경찰청장 조지호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장경태 위원 그러면 뭡니까? 항명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날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시가……

○장경태 위원 아니, 신분을 밝혔는데 왜 막습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를 보호해 주셔야지요, 경찰이!

○경찰청장 조지호 지시가 제대로 전달 안 됐을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그랬고……

○장경태 위원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을 보호 안 하고……

○경찰청장 조지호 계엄사령관이 23시 22분경에…… 아닙니다, 22시 59분경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국회를 통제 좀 해 달라’ 해서 제가 ‘법적인 권한이 안 된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현희 위원 포고령 전에 통제한 걸 묻는 거예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러니까요.

○전현희 위원 포고령 전에 통제해서 못 들어갔다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것은 처음에 계엄이 발령되고 나서 국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저희들은…… 우발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경찰의 기본업무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우발 상황인데 제가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경내에서 경찰이 에워싸고 막았다니까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그 영상이 있어요. 왜 3명이 저를 가로막고 에워쌉니까?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경내인데, 국회 경내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위원장 정청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국방장관직무대행!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차관입니다.

○박지원 위원 차분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거듭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김현태 707특임단장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지원 위원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시를 받고 우리 부대원들을 데리고 내가 왔다. 우리 부대원들은 책임이 없다. 내 책임이다. 나를 처벌하라. 그리고 군을 떠나겠다’,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사실을 이실직고하는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검찰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사법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

따 법무장관한테도 얘기할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새겨듣고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새겨듣고 안 한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닙니다.

○**박지원 위원**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생각이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오케이, 하지 마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지원 위원**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언제 알았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TV 보고 알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TV 보고 알았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박지원 위원** 그러면 누가 경찰을 동원시켜서, 지시해서 국회를 에워싸고 의원들을 다 출입 못하게 했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일단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박지원 위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누군가가 지시를 하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권..... 경찰 여기에 대한 지시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수비 지시를 하는데 하나는 용산 대통령실이고 하나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박지원 위원** 그러면 조지호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을 TV를 통해서 보고 용산과 국회에 경찰을 투입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서울청장한테 전화해서 너무나.....

○**박지원 위원** 서울청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래서 지시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우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저희 경찰 용어로 우발 상황 대비입니다. 우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한 겁니다.

○**박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장관직무대행, 계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더 주세요.

계엄 해제 후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들이 한남동 뒷산에 올라가 있었다는데 무엇을 위해서 거기 올라갔지요? 모였다는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뒤에 일일이 어느 부대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명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확인해 보고. 지금 현재 그 위치에 부대들이 있었는지 또 왜 갔는지는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김용현 국방장관이라는 작자가..... 진짜 이런 걸 보면 또 비상계엄이 잘 났어요. 잘 체포됐어요. 국방장관하면서 북한에서 오물풍선 오니까 ‘원점 타격해라’하고 합참의장한테 지시하니까 합참의장이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 ‘개념 없는 놈. 쟤 빼’ 이렇게 했다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내용 알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니,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의장한테 저는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그런 사실이 없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지원 위원** 그런데 왜 보도가 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박지원 위원** 검찰에 김용현 장관이 진술하면서 ‘포고령을 내가 작성했다’, 사실이에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 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이었던 현 육군총장도 직접 작성을 하지 않았고 방첩사령관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장관이 건네는 포고령문을 전 계엄사령관이 받았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성한 실제 주체가 누군지는……

○**박지원 위원** 그러면 차관은 그때 당시는 차관이고 지금은 장관직무대행인데 장관이 포고령 작성하는 것 봤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못 봤습니다.

○**박지원 위원** 전혀 사실을 몰랐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박지원 위원** 지금 수방사, 특전사 등 직할부대 지휘관 6명을 직위 해제했다는데 사실이에요? 누가 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사실 아닙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지요, 한 바퀴 또……

○**박지원 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 707특임단장 징계하지 말고 처벌하지 마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12월 6일, 7일, 8일 여론조사 해서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지금 윤석열 씨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다가 86%이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 잘못 선포한 거다, 지지하지 않는다가 87%로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경찰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상계엄 사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발표했잖아요, 대국민 담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종북세력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국회와 관련된 언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원 위원 국회 다수당이 입법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고, 그런데 본인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을 깎아서 국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반체제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 담화 들었을 때 주위에 법률 전문가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비상계엄 요건이 되나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때는 저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날……

○김승원 위원 아니,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 왔을 때 청장을 모시는 조직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법률전문가도 있고.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제가……

○김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비상계엄 요건이 되는지를 당연히 검토를 해 봐야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22시 31분에 전화를 해서 긴급하게 국장급 이상 그리고 시·도 청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낙 중대한 사안이고 저희들이 30년 넘게 근무를 해 봤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장급 이상 그리고 시·도 청장 회의를 다 포함해서……

○김승원 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다음부터는……

대통령 명령이라고 다 맞습니까? 다 적법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김승원 위원 본인들도 한 부처의 기관장이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틀리면 틀리다라고 이것 아니다, 일단 대기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릴 줄 아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제가……

○김승원 위원 그걸 쪼르르르 이렇게 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현장에 파견된 군인들, 법률을 잘 모르는 군인들마저 ‘내가 왜 국회에 와서 이걸 하고 있지?’ 그러면서 갈등하면서 본격적인 작전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심선언도 하고.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승원 위원 ‘어떻게 국민들한테 내가 총부리를 겨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절대로 민간인한테 총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명령을 다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현장의 중간급 지휘관 간부들도 그런데 어떻게, 한 경찰청 무리를 이끄시는 분이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잠시 대기해라, 보류해라, 막지 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허약하다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질러 버리는 게……

그래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의 잘못된 명령, 국민의 87%가 이것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것도 그대로 따르더라. 일단 집행하더라. 대한민국 이것 되게 허술하다. 민주주의 토대가 없구나’ 그렇게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바로 잡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양심선언도 하고 사실대로 진실대로 국민 앞에 얘기를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김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지금 방첩사,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검찰 거기 가서 검사를 하는 것 도와주라고 누가 명령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지시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군검찰, 검사랑 같이하라고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김승원 위원 왜요? 검사는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데요? 직권남용죄도 저희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검찰청법을 만든 건 국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패·경제 빼놓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범죄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검찰청에 거기 같이 붙어 가지고 이런 불법 수사를 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군검찰이 국방부를……

○김승원 위원 아니, 군검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고. 왜 거기 검사랑 같이하느냐고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검찰하고 합동수사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승원 위원 한 가지만 말…… 원래 복귀시키십시오. 군검사들 원래 복귀시키세요. 왜 권한 없는 검찰에 거기 붙어 가지고 같이 불법을 저지릅니까?

검토하세요.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용민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저도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님, 계엄군들이 야간투시경, 야투경 쓰고 왔던 데 국회 전기 내리려고 그랬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세부적으로 그런 행동에 대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니, 상식적으로 봐서 야투경 쓰고 왔다는 것은 국회의 전기 내리고 국회 의원 다 체포해 가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증언도, '국회의원 150명 모이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증언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관,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정청래 헌법 제77조 전시·준전시·사변이 아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정청래 위헌적인 계엄이 맞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떠나서 하여튼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위원장 정청래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 이거예요, 헌법 제77조 1항에 의해서. 그리고 형법 91조 국헌문란, 내란죄는요…… 알고 계세요, 내란죄?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위반하면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 즉 헌법기관을 전복시키고 강압에 의해서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내란죄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잘못된 폭거가 일어났어요. 제일 잘못한 사람들 순위를 따져 보면 윤석열 내란수괴, 제일 잘못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장관 그다음에 이를 말리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기재부장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유혈사태를 막은 것은 중간 지휘자들이에요. ‘이것 잘못돼 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국회에 투입됐지만 이것 국민들에게 총을 들이대면 안 되겠네’ 하고 중간에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무력 충돌하지 않은 중간 지휘 간부들이에요, 예를 들면 특임단장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군의 더 큰 잘못, 사람을 살상하고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고 국회의원을 암살할 그런데 러부대까지 동원했는데 그것을 직접 중간 지휘자들은 이게 잘못됐구나, 실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정청래 처벌하지 마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단장뿐만이 아니고 그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잘못이 없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수사 과정에서 그것들을 좀 입증해 주고 증명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정청래 제가 보기에도 지금까지 국방부차관이 비교적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비해서는 그나마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후 조치를 제가 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위원장 정청래 저 아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10년 전에 강신명 청장 때 제가 행안위 간사였던 것 알고 계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경찰의 소원이었던 치안대학원 설립하는 것 제가 주도적으로 도와줘서 설립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경찰에 제가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 때 제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법안도 낸 것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구체적인 입법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국회에서 경찰을 좀 지원하고 싶어도 이번 계엄 사태에서 보듯이 경찰의 총수뇌 지휘부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거예요.

위법한 것을 10시 40분에 인지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도하고 위헌적인 계엄에 동원될 수 없다, 경찰 다 즉시 철수해라, 모든 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용기와 배포가 왜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찰이 도돌이표예요. 무슨 권한을 더 주고 싶어도 하는 짓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싹 없어져요.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경찰들 명예를 먹칠하고 일선 경찰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일반 경찰들에게 자괴감을 들게 하는 것은 윤희근, 조지호 이런 경찰청장들이에요. 반성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위원장 정청래 추가로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만 하시지요, 지금 시간도 됐고 해서.

박지원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현희 위원님 또 서영교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김승원 간사님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3분씩만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현희 위원 아까 저 1분 못 썼으니까 저는 4분 주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예, 4분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6월 28일 방첩사령부 그리고 행안부 산하 국수본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아까 조지호 청장이 이건 의례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이때 당시에 이미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과 제보들이 있습

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른바 충암파들이 이 협약을 주도를 한 겁니다, 행안부장관 그리고 국방부장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여인형 방첩사령부 사령관.

그래서 첨보에 의하면 여인형 사령관이 합동수사본, 합수본을 만들어서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여기에 수사본부장으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2·12 사태 당시에 전두환 전 합수본부장이 맡았던 그 역할을 여인형이 맡기로 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고기동 행안부 직무대행, 이런 업무협약 존재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예, 나중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행안위하면서 저런 업무협약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있었던 것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그때 제가 행안위에서 듣기로는 대공수사 업무가 넘어가면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현희 위원** 국방부 직무대행께서는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봐서라도 이미 이 계엄은 적어도 6개월 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엄령 선포 해제된 이후에 차관께서 또 국회에 출석하셔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하나하나 밝히고 계시는데요. 과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저격수를 운영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에 국회에 저격소총으로 무장한 군인이 침입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당시에 국회에 난입한 이런 부대들이 이름도 정말 무시무시한 HID, 특전사, 707, 수방사 이런 대테러 업무를 하는 특수부대들이 난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충도 들고 있지 않은 민간인, 그것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특수부대를 동원한 계엄이 그야말로 내란으로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부장관대행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고 또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원점 타격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것은 도발을 주최한 그 지점을 직접 공격하는 것을 원점 타격이라고 합니다.

○**전현희 위원** 그러면 북한에 타격을 하려면 적어도 미사일이나 포탄을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사거리.....

○**전현희 위원** 아니면 비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포탄을 떨어뜨리든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다양한 방법의 수단을 가지고 원점 타격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다행히 원점 타격이 합참의장이 거절해서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원점 타격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아마 원점 타격이 일어났다는 그 대전제 앞에는 그것을 해야 하는 군사적 어떤 필수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점 타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현희 위원** 원점 타격을 실제로 지시를 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점 타격이 일어났다면 사실상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 이를 빌미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을 거다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이 이런 일을 벌이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반드시 목숨 걸고 막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지 않고,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위는 결심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막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정청래**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 섞인 발언이거든요. 그것을 좀 더 강조해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내란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수괴 겸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씨가 국지전이라도 일으켜서 제2의 비상 계엄을 다시 선포하고 다시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또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총부리를 들이대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국방부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국방부차관께서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 말씀 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제2계엄과 같은 국지전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담화문을 하시면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말씀하셨고, 원점 타격은 군사……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 씨 말은 못 믿겠어요. 윤석열 씨 말은 빼세요. 못 믿겠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원점 타격은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시행하는 군사적 작전이고 행동입니다. 이 군사적 조건이 성숙이 되면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군, 즉 합참이 대통령님께 건의를 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적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통수권자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 공격을 하라 하는 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비상계엄은 요건이 갖추어져서 선포됐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짧은 순간에 아마 그것을……

○서영교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니래요. 저는 그렇게라도 말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계엄은 요건이 갖춰지고 충족돼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까? 군인 동원은 요건이 갖춰져서 동원됐습니까? 다 동원됐고 다 진행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윤석열보고 국군 통수권자라면서요? 윤석열이 국군 통수권자예요. 차관이 막는다고 돼요, 그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윤석열이 국군 통수권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치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의 위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에 함께하지 않고 내란죄에 동조한 국민의힘이 내란의힘이 되어서 윤석열의 존재를 유지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윤석열은 출국 금지됐어요. 들으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서영교 위원 윤석열은 출국 금지됐어요. 이제 체포해서 구속시켜야 돼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탄핵해야 직무가 정지되고.

원점 타격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요? 미사일 누르는 단추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핵무기 단추는 누가 갖고 있어요? 전쟁의 요건은 누가 갖고 있어요? 국방부차관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막으세요.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시켜야 합니다. 직무 정지시키지 않으면 무슨 위험이 올지 모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국회의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요?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막아 놓고?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처음에 우발 대비를 했다가 그런데 현장에서……

○서영교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이 직접 국회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는……

○서영교 위원 영상 틀어 보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를 하는 무전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내가 올라가는 것 막아요, 안 막아요? 잡아당기고. 저 손 잡는 것 보여요, 안 보여요?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데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그런데 안 막았다고요? 경계를 위한 거라고요? 용산에는 경계를 위하여 경찰 보냈겠지. 그런데 국회의원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서 이 비상계엄령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제하지 못하게 했으니 그것은, 경찰청장이 어디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막지 않았다고요?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다 들어가게 했다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23시 7분경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거부를 했고, 그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하니까 다시 전화가 와 가지고 포고령이 내려가니까 포고령대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포고령을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짧게 검토를 했는데 어쨌거나 포고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계엄법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없이 허용을 했고, 받아들였고 서울청에 제가 지시를 하고 서울청장한테 통화를 하니까 서울청장이 ‘그러면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은 막는데 국회가 담이 낫은데 월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문길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대규모로 들어가서 국회에 우발 사태가 나는 것만 막고 월담하는 것은 제지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영교 위원 아까까지 그런 말 안 하더니 지금 내가 증거를 대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데……

○경찰청장 조지호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월담하는 걸 제지하지 않았어요, 막았어요? 내가 가니까 ‘다 막아, 짹 다 막아’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걸 뒤에서 잡아당기고 그리고 앞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다 막으라고, 짹 다 막으라고 그리고 짹 다 끌어내라고 지시했잖아요. 해 놓고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고, 온갖 곳에 증거가 다 있어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이 되었어요. 국민의 수족이 되어야지 윤석열의 수족이 됩니까?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그래서 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이 처음부터 막을 계획이었으면 중간에 허용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영교 위원 자꾸 거짓말들 하지 말고. 어떻게든 막아서 윤석열 비상계엄을 전부 다 실행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경찰청장 뒤쪽에 앉은 안경 끼신 여성분 잠깐만 좀 일어나 보실래요?

경찰입니까? 어디, 누구시지요? 어디 소속이에요?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도윤희 방위사업청 소속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방위사업청입니까?

○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도윤희 예.

○위원장 정청래 앉아 주십시오.

청장 답변하는데 계속 표정이 너무 안 좋고 좀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어느 소속 공무원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든,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지금 다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아직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정신을 덜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참 한심합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국민이 윤석열을 버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여론조사에 드디어 한 자릿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빨리 대한민국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식시장, 환율 지금 다 널뛰기, 아주 폭락을 하고 난리 났습니다. 국민들 지금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상화시키려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선관위에서 오신 사무총장님, 12월 3일 날 불법 침입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김승원 위원** 오늘 12월 9일인데 피해 상황 국민께 보고해 주시지요. 간결하고 빠르게 보고를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22시……

○**김승원 위원** 그런 것 말고요.

핸드폰 뺏긴 사람이 몇 명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당시 야간 당직자는 5명입니다.

○**김승원 위원** 5명이 다 핸드폰을 뺏겼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런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김승원 위원** 언제 돌려받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철수하기 전에는 다 돌려받았습니다.

○**김승원 위원** 철수하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김승원 위원** 철수는 몇 시에 했나요? 계엄령 발의되자마자 몇 분 안에 왔다면서요. 10시 한 40분경에, 삼십몇 분경에 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한 다음에 1시 55분에 완전 철수하였습니다.

○**김승원 위원** 2시간. 그러면 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3시간 20분 정도 점거하였습니다.

○**김승원 위원** 3시간 반 정도 있었고.

어디 어디가 침탈당했습니까? 서버에 들어와서 사진 찍은 동영상도 공개되고 그랬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관제센터라고, 그러니까 관제센터가 지금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즉 사람이 청사에 남아 있는……

○**김승원 위원** 관제센터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다른 곳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안내동에 요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정문 안내동에 1명 그다음에 청사 본관 바로 1층 방호동에 요원 1명.

○**김승원 위원** 그러면 뺏긴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그들이 가져간 자료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없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없고, 아까 서영교 위원님이 사진을 찍는 행동으로써 서버에 어떤 전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봤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전자적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도 모든 가능성은 열어 놓고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상세한 피해 내역을 저희 법사위에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현재 아무……

○**김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국정원인가요 뭘 심어 놨다면서요, 프로그램을?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작년에 언급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미 국회에, 조사 과정에서 전부, 처음에 4개 나중에 추후에 1개 프로그램이 삭제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승원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엄군이 선관위를 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사무총장의 최종 판단은 어떻습니까? 국민께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선관위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도 사실관계를 확정시키기 전까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아니, 지금 6일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해요? 국민 앞에 빨리 소상하게 말씀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실 때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명태균과 관련된 여론조사 자료를 파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와 같은 여론조사 자료를 현재 보관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후에 얘기하는 부분에서, 특히 관제센터 서버에 촬영하고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에, 지금 김용현 국방부장관 스스로가 부정……

○**김승원 위원** 아니 총장님, 그들이 와서 그냥 떠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왔는지, 예컨대 21대 총선 아니면 22대 총선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걸 목적으로 왔는지 등등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도 그 부분을 보고 서버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봐, 외관으로 반출된 사실은 지금 확인되지 않지만 그와 같은 전자적 시스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로그기록이나 전자적인 접근 정보나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했는데 그와 같은 내용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자적 전문지식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왜 저희 관제센터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면밀히 밝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원 위원** 그러면 아직 왔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정청래 그것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요.

○전현희 위원 선거관리연수원에 국회의원들 구금시키려고 그렇게 다…… 선거관리연수원, 그런 것 없었나요?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쪽에다 물어보셔야지요. 왔다 간 자들에게 물어보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저희가 성명을 발표했고요.

○서영교 위원 왔다 간 자들에게 물어보고 너희들이 무엇을 갖고 갔는지, 어떤 불법을 했는지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저희가 얘기는 일단 성명서에서 했고요. 다만 진입 과정에서……

○서영교 위원 성명서로 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계엄군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전현희 위원 HID라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그래서 밝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계엄군으로 저희한테 들어왔는지를 저희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승원 위원 프로그램 전문가 대령·중령이 갔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서영교 위원 이 확인을 국방부차관이 해 줘야 되겠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래서 저희가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그 계엄 관계 당국이 이런 부분을 빨리 확인해서 이유와 법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방부차관이 확인하셔야 되겠네.

○박은정 위원 국회보다도 먼저 갔어요, 선관위를.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 시중에서는 서버의 포트 번호만 알면 사이버사령부에서 언제든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 점까지 전부 확인해서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이 없도록 계속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국회의원 구금하려고 선거관리연수원에 계엄군 갔다는 것도 사실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 부분은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듣습니다.

○전현희 위원 기사에 많이 났던데……

○서영교 위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무슨 금시초문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전현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알겠습니다.

○ **장경태 위원** 선거연수원에 왜 130명이나 갔겠습니까, 사실? 선거연수원 점령할 것도 아니고.

○ **위원장 정청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지호 경찰……

○ **이건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 신청을 했었는데……

○ **위원장 정청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 **이건태 위원**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까.

○ **위원장 정청래** 아, 그렇군요. 체크가 돼 있는데 미안합니다.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건태 위원**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이나 특전사 사령관이나 수방사 사령관 이분들은 한 부대, 한 기관 전체를 지휘하는 분들이잖아요. 대통령의 사병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하면 법률에 맞는 지시인지를 먼저 검토할 의무가 있어요. 비상계엄이 선포 됐으면 먼저 경찰청장은 법전을 놓고 이 비상계엄이 타당한 지시인지를 판단했어야 돼요. 그 판단 하셨어요?

○ **경찰청장 조지호** 처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예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있었고……

○ **이건태 위원** 판단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경찰청장 조지호** 그래서 제가 참모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한 겁니다.

○ **이건태 위원** 아니,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잖아요. 그 판단 하셨어요? 그 판단을 안 하셨으면 경찰청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경력을 투입해서 그 경력이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력을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도 군 병력을 국회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비상계엄의 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요건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것 보낼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 맞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과 경력을 국회로 보내 가지고,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판단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이 로텐더홀을 장악하고 군인과 경찰의 진입을 막고 또 현장 지휘관, 1공수여단장 이상현,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이 사람들이 실탄 지급을 금지하고 총을 뒤로 메라 이런 구체적인 무력 충돌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 또 우리 국회도 시간을 못 벌어 가지고 해제 요구도 의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장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장에 와서 의원들을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경력을 내려보낸 것 자체가 문제란 말이에요. 왜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경력을 내려보내느냐는 말이에요. 그것 책임지셔야 돼요.

선관위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선관위는 현법 기관이잖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이건태 위원**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계엄군을 보냈느냐.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왜 계엄군이 선관위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짐작이라도 말씀을 해 보세요. 선관위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그 판단을 국회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다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확정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요.

○**이건태 위원** 확정은 못 하지만 선관위의 짐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요일 날 긴급 위원 회의를 열어서 당국의 이번 계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외부에 공지를 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은 일종의 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기관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저한테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유가 도대체…… 황당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왔지라고 할 수밖에 없고. 단순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을 대표하는 자로서 공적인 견해를 발표하는 내용인데 추측을 할 수 있는 추측성 견해밖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위원장 정청래** 사무총장님, 아까부터 반복되는데 제가 짧게 물어볼게요.

중앙선관위도 헌법기관으로서 계엄의 피해자다 이런 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억울하고 열받는다 이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정청래** 우리도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이거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그 조치를 하시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그런데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사실관계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성윤 위원** 물으라고요.

○**서영교 위원** 가서 물어보세요, 찾아가서 당당하게.

○**김승원 위원** 관계기관 협조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성명서만 하나 딱 내는 게 맞아요? 적당히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청래** 정리하시지요.

○**서영교 위원** 피해자면 피해자로서 정확히 얘기해야지……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수사대, 방첩사가 거기를 찾아갔으면…… 방첩사하고 사이버수사대는 누구 산하기관입니까?

국방부차관, 국방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국직부대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불러서 물으세요. 불러서 거기 왜 갔는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세요. 어서 확인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내란의

수괴하고 같이 동조자로 가니까 물어 갖고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정청래 선관위가 저렇게 억울해하고 열받고 분노하고 그 이유도 모르겠고 궁금하다고 하니, 바로 옆에 기관장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선관위 왜 갔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가 가라고 지시를 하거나 그런 걸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청래 그렇기는 하지만 과악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왜 갔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때 당시 이후에 실제로 그걸 지시했던 사람들을 제가 소집하거나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직무 배제되고 다 지금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제가 지휘관계 속에서 와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예.

○위원장 정청래 소관 기관인 국방부장관직무대행도 모르겠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지요,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조지호 청장!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위원장 정청래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이?

○경찰청장 조지호 갑자기 물어보셔서……

○위원장 정청래 조지호 청장의 생명 아니에요, 제일 소중한 것이?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위원장 정청래 누구한테 폭행당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어릴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폭행당해 본 적 없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어릴 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많이 맞았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맞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렇습니다. 맞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파요?

○경찰청장 조지호 당연히……

○위원장 정청래 그렇지요?

무고한 시민, 국민들이 불법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경찰이 가서 더 때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은 당연히 말려야……

○위원장 정청래 말려야 되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위원장 정청래 이번에 말렸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장 정청래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은 사실 그런 우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력 배치를 한……

○위원장 정청래 청장, 잘 들으세요. 경찰의 흑역사 수없이 많지만 3·15 부정선거로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킨 것도 경찰입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의 주동자는 아닐지라도 부역한 것이 경찰이에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의 특수부대가, 총 들고 암살·납치하는 특수부대들이 중무장을 하고 야투경을 쓰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잡아가고 구금하고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찰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합니까?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 학살, 이거 국군에서 저지를 거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정청래 그 오명을 또다시 연장하고 있어요.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이거 요 국민한테 총부리 대고 총 쏘려고 그랬습니까?

차관!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정청래 군대는,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그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려고 국회로 쳐들어왔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대오 각성하고 반성하려면 그 후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정청래 똑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국민을 바라보고 저희들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거기에 맞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련된 수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아직도 핵심을 못 짜르는데 똑바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내란수괴범 겸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의 국군 통수권을 회수하고 체포·구속하고 감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총기 난사의 위험을 없애고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불모로 불장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게 국방부가 지은 죄를 씻는 첫 번째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왜 답변 못 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아는데 그런 것들을 국방부가 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청래 그러니까 협조를 하세요, 협조를.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지금 충분히 협조 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5항, 27항, 28항, 제32항, 제35항 및 37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 제18항부터 21항까지, 23항부터 26항까지, 제29항부터 제31항까지, 제33항, 제34항 및 제3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의사일정 제17항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제22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는데요, 이석하기 전에 혹시 손 들고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아까 말씀 중에 관련 법규를 하나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 정정드리겠습니다.

내란죄 관련해서 현재 군내 수사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방첩사가 있고 군검찰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확인한 사실입니다. 현재 내란죄 관련해서는 군검찰과 방첩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군사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알겠습니다.

김선호 차관님, 김종철 청장님, 강환석 차장님, 고기동 차관님, 김용민 사무총장님, 조지호 청장님, 허석곤 청장님, 연원정 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7시29분)

○위원장 정청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들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한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1)

39.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292)

(17시30분)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39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개별 특검법 등과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총 3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40인, 특별수사관 80인, 파견공무원 80인이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특별검사는 수사를 위한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예산에 관하여 지급해야 할 기간을 정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요구기한 내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였고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하는 등 동 제정안이 상설특검법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총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4인, 파견검사 30인 이내, 특별수사관 60인 이내, 파견공무원 및 직원 60인 이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성재 장관, 천대엽 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승원 간사님께서 상설특검법이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 3분 정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정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수사요구안.

○**김승원 위원** 오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12·3, 수사요구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내란 행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인형이라든가 기존의 것들은 다 포함을 시켰고 추가로 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도움을 준, 방조한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를 시켰고요. 두 번째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체포를 위해서 위치추적을 도와 달라든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수사 대상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 정청래**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됐지요?

○**김승원 위원**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도움을 준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행위에 방조한 것, 두 번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를 도와 달라고 지시한 점에 대한 범죄행위, 세 번째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발령에 필요한 국무회의를 함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도움을 준 점, 그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분 토론하세요.

서영교·박지원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3분간 하세요.

○**서영교 위원** 저희가 아까 윤석열 관련해서 출국금지를 당장 해야 된다라고 공수처에 이야기했고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법무부장관께 여쭙니다.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 그 요청 사유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어떤 근거로 출국금지를하게 되었는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서영교 위원** 알지 못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서영교 위원** 그러면 뒤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출국금지 관련해서 윤석열 피의자는 왜 출국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알지 못한다면 왜 출국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출국금지를 승인했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윤석열 피의자는 왜 출국금지되어야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공수처에서 그 사유를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서 적어 왔을 것 같은데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 아까 공수처장 있을 때 물어

봤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서영교 위원 출국금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보고 싶지 않은 것 아닙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니 위원님, 제가……

○서영교 위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도 아무 얘기가 없고……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보면 봤다고 뭐라 하실 거고요.

○서영교 위원 출국금지는 법무부에서 하는 건데 봤다고 해서 뭘 뭐라 그럽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게 출입국본부장 전결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출국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피의자이면서 대통령으로서 이 위헌하고 불법한 내란죄 관련해 직권남용 등으로 출국의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중에 출국의 우려가 있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포고령을 내려서 그리고 이것을 포고하도록 하게 하는 직권남용의 죄가 있고, 그리고 계엄 담당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등등 그럼으로써 피의자가 되었는데 출국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국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금지 요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법무부는 출국금지 승인을 내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왜 말을 못 합니까? 법무부장관이 왜 법무부장관 입으로 말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 ‘내가 비상계엄 때 제대로 말은 못 했지만 지금은 제대로 말한다’이라고 말해야 법무부장관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무부장관 역할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모르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시면…… 아까 우리 출입국본부장이 있어서 출입국본부장이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출국금지의 내용을 만천하에, 국민들께 알려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출국금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긴 거예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긴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부분은 공수처에서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무부장관, 제대로 하세요. 이제 법무부장관 역할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정도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답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그다음에 김승원 간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제적으로도, 미국에서도 벼림을 받았고 우리 국민들도 벼렸습니다. 국민일보 창간기념일에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은 11%, 부정적 평가가 86%입니다. 국민 열 사람 중 아홉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국방장관직무대행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군 707특임단장 김계현 대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즉 지시를 받고, 국회에 150명 국회의원을 채우지 못하게 해라라고 했지만 계엄이 해제돼서 자기들은 퇴진을 했고 이 책임은 자기에게 있지 부하 직원에게 있지 않다, 이것이 군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고 세계 민주시민들의 요구입니다.

대통령이 싹 도망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707특임단장을 징계 처벌하지 마라, 공익제보자이고 의로운 사실을 밝힌 사람 아니냐 했더니 국방장관께서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지 않겠다.

아, 김현태 대령입니다.

그런데 검찰 특수본부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한다 그래요. 이분도 대통령에게 전화 온 것,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정청래 체포하라고 한 것을 밝힌 사람입니다. 국민에게 고발해 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무부장관께서는 또 확답하기가 어렵지만 검찰 특수본에 연락하셔서 홍장원 전 1차장을 구속하지 마라 하는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검찰총장이 위원님 말씀 듣고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어떻게 들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이 TV를 보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위원 이 TV 볼까요? 제 말씀을 전해 주세요.

아니, 고개만 끄덕이면 안 돼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사실은 전화 한 번 하고 싶어도 또 다른 수많은 오해가 있을까 지금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저희 계통을 맑아서 얘기하는 건데 합법적인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전달해 주세요. 아니, 살펴본다는 의미는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전달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김승원 위원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사가 급한 사람들도 많은데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씨를 꼭 불러내서 수사를 하는 그 의도가, 저의가 뭐냐, 양심선언 하

겠다는 공무원들한테 경고 주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보면 국민은 윤석열을 버렸고 지금 공직자들도 윤석열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보가 쏟아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오늘 방첩사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압수수색하면서 방첩사에 예컨대 전시서버가 있고 평시 서버가 있는데 어느 한 서버만 압수수색을 하고 어느 한 서버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방첩사에 들어가 보니 별다른 자료가 없더라고 이렇게 수사 발표하거나 그렇게 활용될 것이라고 하는 걱정에 또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아마 지금, 저는 이게 직권남용죄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꾸 수사하는 것도 멈춰야 된다라고 하지만 수사를 하면 할수록 관련자들이 정당한 또 진실이 뭔지를 자꾸 이렇게 국민 앞에 제보한다는 점을, 그것은 꼭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이 12·3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출국금지된 사람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 출국금지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관 업무시니까 국민 앞에 알려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출국금지 요청이……

○김승원 위원 김용현 전 장관 출국 금지됐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고요. 출입국본부에……

○김승원 위원 아니, 보도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출국금지 요청이 여러 기관에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출입국본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거부했다는 보고를 받아 본 것은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지금 출국금지가 됐다고 하고요.

혹시 그러면 김건희 씨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도 들어왔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들어 본 것은 없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 부분은 장관님 업무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그것을 빠르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출국금지가 됐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김승원 위원 나중에 출국하면요, 도피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좌 동결 문제도 있는데요. 정청래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계좌 동결하려면 보전처분이 필요로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것…… 몰수보전처분이 있어야 계좌 동결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그것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알지 못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다들 저보고 관여한다고 뭐라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승원 위원** 아니, 오늘 계엄령 거기마다 서명 안 하신 것을 밝히신 것은 그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장관님께서 그래도 국민을…… 지금 비상시국이니까요,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어제 특수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검에만 보고한다 그랬고 저는 지난번부터 보고받지 않는다고 했고……

○**김승원 위원** 아니 장관님, 저는 지금 장관님의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사실 평소에는 다 자기들이 정보 보고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멈췄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오늘 내란수괴 겸 국군 통수권자 겸 현재는 법적으로 대통령인 윤석열 씨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11%입니다. 며칠 있으면 5%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지지는 5% 그리고 반대는 95% 이렇게 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 5%도 아마 여론조사 응답을 착각해서 잘못 대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판은 끝났고 대세는 기울었어요. 지금이라도 이 망한 윤석열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이냐, 윤석열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국민들 편에 설 것이냐 결정할 시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나는 순장조로 같이 감옥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강력하게 말리지도 못하고 제지하지도 못하고 하마터면 유혈사태 나오고 국회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질 뻔한 것에 대해서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면 법무부장관을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민 편에 서세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거 얘기하세요. 자꾸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장관님,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제일 잘못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제일 잘한 것이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다음 잘못한 것이 국무위원, 국무총리예요.

국민들 앞에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장관 하면서 국민과 민주주의에 조금이라도 그나마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무부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제 말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제 말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잘 알고 제가 처신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전적으로 동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멀었군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청래 예, 하세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 영장 청구 등 영장 기각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것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마는 사실 이번에 발의되는 것처럼 특검법에 의한 경우에는 수사권의 주체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영장의 내용이 아니라 그 형식이나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다만 이렇게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그런 성격의 비상계엄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사달이 생겼는데 그럴수록 저희들은 사법부의 판사들이라도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승원 위원님이나 또 김용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반 수사로 갈 때에는 경찰의 수사권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검찰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법관들이, 특히 영장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함에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형식이나 주체 문제 때문에 조금 예측과 다른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은 현재 수사권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럴 때는 대법관이나 이런 데에서, 대법관들이 좀 회의해서 방향은 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이라면 그것이 무슨 판결하는 데 지침을 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개별 판사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54분)

○위원장 정청래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12·3 비상계엄 관련 협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40항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40. 12·3 비상계엄 관련 협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정청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11일 9시 30분에 개최 예정인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위하여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8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 출석 요구는 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5항에 따른 7일 전 송달 기한을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지금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상황이고 증인 모두가 공직자들이므로 현안질의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나오시겠지요? 현안질의?

○법무부장관 박성재 내일모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청래 예, 나오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장 정청래 왜 대답 안 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정청래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 1분만 말씀.....

○위원장 정청래 진짜 1분 하는지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1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안건명이 이미 정해는 졌지만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국회나 온 국민이 12·3은 내란 행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이건 나중에 바꿀 수 있답니다.

○김용민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성재 장관님이나 법원행정처장님도 상당히 입장이 민망하기도 할 것이고 난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그런 심정보다도 어쩌면 국회에서 중무장한 자동 소총을 소지한 군인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체포되고 두들겨 맞으면서 끌려가는 그 상황이었다면, 그런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두 분께서

도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습니까?

제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체포 대상이었다고 그리고 제 위치 추적도, 확인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끌려갔다면 방첩사 어느 지하 병커에서 지금 얼굴이 벌겋게 두들겨 맞고 있겠지요.

그런 국회의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다소 불편하고 민망한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좀 더 큰 가치와 대의를 위해서 국민들의 질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위원장 정청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8인)

성명	직위	출석요구 사유	출석요구 일시·장소
박성재	법무부장관	12·3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2024. 12. 11.(수) 09:30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본관 406호)
류혁	법무부 감찰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출석 위원(11인)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정청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상업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 고기동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

병무청

청장 김종철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정책조정담당관 도윤희

경찰청

청장 조지호

소방청

청장 허석곤

○법원총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총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